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6. 5. 8.(금) 10:00

장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욱 위 원 (6명)

불참위원 : 없 음

---

##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종철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 6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김종철 위원장
  - 2026년도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위원회는 매주 쉽 없이 회의를 개최하며 그간의 방송미디어통신 행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급을 요하는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자임했듯이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일하는 위원회'로서 속도감 있게 안건들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총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송 3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등은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고 국민과 기업에 영향이 큰 현안들입니다. 합의제 정신에 따라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여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종철 위원장

- 먼저 2026년도 제5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과 함께 제6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을 살펴봐 주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동의해 주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2026-07-404)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겸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신료 결합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삭제하고,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 제67조 변경에 맞춰 변경 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공포 및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 건은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방송법 시행령의 모법인 방송법이 이미 개정되어서 방송법과 시행령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법 형식적인 조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민수 위원

- 간단한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지금 주요내용에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 제67조 변경에 맞춰, 변경 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법 개정 전 개정에 맞춰’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겸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사무처에서는 향후 의안 상정할 때 특히 이런 법제 정비와 관련해서 법률상의 용어를 엄정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무처리지침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수 위원님 의견에 따라 회의 안건 내용 부분은 사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안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상위법과 상충되는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법적 인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처에서는 남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송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6-07-405)**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방송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겸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 “「방송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위임 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8월 26일에 방송법이 공포·시행된 바 있고, 올해 4월 10일에 방송 3법 후속조치(안)를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법제처 사전심사, 관계부처 의견 조회, 사전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4월 15일부터 27일까지는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방송법 시행령입니다. 편성위원회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안은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및 ‘추천을 받지 아니한 시청자위원 위촉’ 등에 대해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제처 사전심사 결과는 과태료가 신설되는 법 조문의 순서를 고려하여, 기존 [별지 4]의 위반행위 ‘목’ 등을 수정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안)입니다. 입법예고안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이었고, 해당 사업자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을 겸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둔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제처 사전심사에서는 법 체계 정합성을 위해 조문을 이동하고, 위임범위를 고려하여 후단 조항, 해당 사업자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을 겸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둔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공개 의무 방송사업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제처 사전심사 결과는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사자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예고안은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종사자 대표 제도의 취지가 현장 제작 종사자의 의견 및 권익 반영임을 고려하여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한정했습니다. 주요 접수 의견으로는 종사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재·보도·제작·편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종사자’를 ‘근로자’ 개념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 제4조의2의 입법 취지와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 대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종사자’의 범위를 일반적인 ‘근로자’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약의 제·개정 및 시청자 위원 추천 등 방송사의 핵심 가치와 장기적 운영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종사자 대표 선출권은 해당 조직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고용 관계를 맺으며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각 부문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각 방송사의 편성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예고안은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고, 복수의 후보 중 어느 한 후보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를 종사자 대표로 선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종사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중 대표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대표의 선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투표권자 확정 등 관련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접수 의견입니다. 행정예고안에 찬성하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 여부 확인을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조합원 및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투표를 통해 종사자 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투표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종사자 과반이 속한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1안>과 <2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안>은 제3항을 제2항에 따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로 확정된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2안>은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 [별지]에 그 논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사추천단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이사추천단체의 선정절차와 기준입니다. 행정예고안은 공영방송 이사추천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및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천단체의 기본요건으로는 단체의 지속성·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립된 지 5년 경과, 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이 있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활동기간 및 회원수 등 단체의 대표성,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관련 활동내역,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사회공헌 등 공익적 활동내역,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제19조의3 제4항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제19조의3 제4항의 내용을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로 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추천단체별 요건입니다. 행정예고안은 이사추천단체 공모와 관련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의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었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방송 또는 언론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였고, 변호사 단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주 회원으로 하되 변호사의 권익보호, 법률제도의 개선 및 공익적 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별도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관련 기준입니다. 행정예고안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중립성·객관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준으로는 전국단위의 여론조사실적 최소 기간·기준 및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 조사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하였고, 결격 사유로 해당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등록·승인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규칙 개정안은 관보게재 및 시행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보고 감사합니다. 다만, 보고 중에 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충이 필요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접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개진된 부분들을 수용해서 편성위원회 구성의 부문인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정의조항 반영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방송편성위원회의, 방송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최소한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최소주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 방송사별 종사자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소 요건으로서, 최소주의에 따라서, 자율주의에 따라서 방송사별로 이 기준을 참조하여 범위를 정하게 되는 체제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도 향후 자료들을 준비할 때 이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만 오해를 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된 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 아시다시피 「방송법」 개정에 관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인데 관련 사항들은 이후 소위 방송 3법에 해당하는 방문진법이나 교육방송법 등과도 관련되는 논의사항이라는 점들을 고려하여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일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안건에 있어서도 같이 반영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상근 위원

- 제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 왔습니다. 혹시 표현이 조금 과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사무처에서 배포를 도와주십시오.

#### ○ 이상근 위원

- 이것은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관련자들과 제가 면담하면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읽고 나서 제 의견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제2조의3 수정안은 종사자 대표의 자격과 선출 절차를 정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특정 방송사업자, 특히 KBS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종사자 대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안 제2조의3

제3항은 "확정된 투표권자의 과반수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은 적어도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종사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위법은 취재·보도·제작·편성 등 일정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종사자를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사의 조직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방송사 내부에는 기자, PD, 아나운서, 기술, 경영, 행정, 연구, 콘텐츠 유통, 디지털, 지역국 인력 등 다양한 직군이 혼재되어 있고, 순환근무·겸직·파견·직무변경도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누가 종사자인지, 누가 투표권자인지, 그 범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사자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방송사별 자율 판단에 맡겨질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어느 직군을 포함하고 어느 직군을 제외하느냐에 따라 투표권자의 규모가 달라지고,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지위를 갖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종사자'의 범위 설정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종사자 대표를 누가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점에서 본 사안은 일종의 "KBS 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거구 획정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대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면, 이번 수정안은 '종사자' 범위와 투표자 확정을 통해 특정 노동조합의 대표 지정권 발생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듯, 종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종사자 대표의 귀속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주요 방송사업장 가운데 과반노조가 되지 않은 곳이 사실상 KBS뿐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종사자' 개념 조정과 수정안 제3항의 결합은 KBS를 겨냥한 제도 설계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일정하게 좁히거나 특정 직군 중심으로 재구성할 경우, 현재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도 '확정된 투표권자' 기준에서는 과반노조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실제 전체 구성원의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도 종사자 대표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표 선출의 민주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종사자 대표는 말 그대로 종사자 전체의 의사를 대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수정안 제3항은 제1항에서 정한 "종사자 재적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선출" 원칙을 예외 조항으로 무력화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지정만으로 대표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선출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지명을 허용하는 구조이며, 전체 종사자들의 민주적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KBS에는 복수노조와 상당수 비조합원이 존재합니다. 특정 노동조합이 일정 범위 안에서 과반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비조합원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지, 별도의 민주적 절차 없이 전체 종사자를 자동으로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정안 제3항은 특정 노동조합에 전체 종사자 대표 지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조합원과 소수노조 조합원의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편성위원회는 단순히 방송제작 현장의 자율성만을 다루는 기구가 아닙니다. 방송법 개정 이후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와도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기구로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성위원회의 종사자 대표 구성은 KBS 운영 전반의 공정성, 독립성,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기구의 대표를 특정 노동조합의 지정에 맡기는 것은 권한 집중과 대표성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안 제2조의3 제3항은 종사자 개념의 불명확성을

이용하여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한 대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조항입니다. 특히 KBS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종사자' 범위 설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종사자 대표 선출 구조를 특정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KBS 판 계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정안 제2조의3 제3항이 삭제된 <2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안 중 삭제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류신환 위원

- 방금 이상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다만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군 범위와 관련해서 그렇게 한정된 것이 마치 특정 방송사의 지형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편성위원회에 관한 방송 3법 개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방송사에서 사측에 의해 그동안 편성권이 침해되어 왔던 부분들을 노사가 대등하게 자율적으로 편성권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측의 의견과 노측의 의견이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영이나 행정이나 이런 지원 업무를 하는, 사측의 이해 도모할 수 있는 직업 영업군은 노측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배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등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데 필요하다는 고려가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1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꼭 설명하신 내용 중에 자격 종사자 대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4개 부문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시행규칙에 위임했고, 법이 선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선출이나 지명 등 대표성을 가진 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먼저 4개 부문 종사자들이 투표의 방법으로 대표자를 뽑도록 한 것은 종사자 개인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4개 부문 종사자의 과반이 속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종사자 대표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 투표 선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법제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의 대표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도 원칙적으로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뽑도록 하면서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근로자 대표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종사자 대표를 정하도록 하는 방법은 헌법상의 권리와 기존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종사자 대표 선출 방법의 하나로 충분히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법률에 위임한

권한 범위 내이고, 저희 위원회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이 MBC 파업 관련 사건에서 주지하다시피 방송의 공정성은 언론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영역과는 다른 설시입니다. 대법원 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점을 우리 법원도 인정해 왔습니다. 실제로 사측이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편성에 관여해서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방송사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편성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조항은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방송 분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대등한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부디 앞으로 4대 부문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조로서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이 법의 취지에 따라 편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송 공정성을 지켜 나가는 데 노동조합이 건강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1안>에 찬성하겠습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께서 행정예고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최수영 위원

-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비슷한듯하면서도 엇갈리는데, 어쨌든 이상근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특정 방송사에 경도되는 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방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류신환 위원님은 근로자 대표를 과반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많아서 이것은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취지가 노사가 5:5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라, 이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그다음에 방송을 편성하고 제작하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말씀하신 대등주의겠지요. 그러면 대등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사측은 정해서 올 테지만 노측이 정하는 5명이 저는 그 절차까지도 굉장히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과 대표성이 어떻게 더 담보되느냐에 따라 더 힘도 갖게 되고 또 대응력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반이 되었으므로 위임받았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명한 사람이 가서 사측과 편성위원회에서 협상하라고 하는 일종의 기계주의적 발상은 이것이 새 방송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등주의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간접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제한적이고 간접적 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직접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는 않는데 편성권이야말로 정말 방송의 가장 핵심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안에서 노측이 추천한 분들이 그 편성권의 행사를 강력하게 할 텐데 행사 구조가 바뀌어서 결과가 바뀌면 상대 파트너인 사측의 사람들도 바뀔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한적이냐, 이것이 간접적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노측 구성원들이 갖는 대표성이 더욱 충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고 간접적이니까

그동안 과반노조가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가자는 말들은 너무 이 사안을 가벼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대등주의와 함께 또 하나가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방송사 자율과 국가의 보충적 개입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측은 어쨌든 그동안 말하자면 방송사의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니까 노측이 동등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자는 것을 저희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여기에 노측의 선출 구조에 대표성·정당성이 절차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저희가 '종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으면 쉽게 그 말 그대로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일종의 교섭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교섭단체 대표 구조를 저희가 파트너로 인정하면 되는데, 굳이 종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가 취재·보도·제작·편성, 사실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이 사례 직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격론을 벌였는데,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근로자가 아니라 종사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단체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정해서 파트너로 지정되거나 지명됐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이 법의 완결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논지가 다 위원님들의 생각에 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법의 취지가 제 생각건대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생략해도 한다는 이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2안>을 강력하게 찬성하겠습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2안> 삭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민수 위원

- 일단 게리맨더링은 우리가 게리가 아닙니다. 미스터 게리가 아니고, 범위를 확정시키는 것은 우리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취재·보도·제작·편성과 관련된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무엇무엇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스터 게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 조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상근 위원님의 우려는 일단 맨더링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기준이 우리 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는지 '누가'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규칙에서 크게 취재·편성·보도·제작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그 정의 안에서 해당 사업자 안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 가장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방송법에 있는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점, 즉 위임입법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논의구조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상근 위원님과 최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연결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자가 추천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서는 전체 근로자를 상정하시고 이들이 다 참여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위법한 시행령과 규칙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돼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범위 내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지,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중철 위원장

-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최종적인 의견은 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 고민수 위원

- 그것을 종합하면 저는 <1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 김중철 위원장

- 행정예고안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먼저 종사자 정의 부분입니다. 방송법에서 전체 종사자 중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를 구분하고 있고, 지금 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에서 방미통위에게 정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정하지 않고 갈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칙안은 최소한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정의를 내려놓고 그다음 방송사별로 직제나 제작 방식 등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최소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하나는 투표를 통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반노조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투표를 부여하는 방식에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다수나 다득표자가 선정되는 방식이고, 과반노조에게 대표성을 인정하는 방식에도 이 과반노조라는 것은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가 과반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방송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의 종사자의 다수 또는 과반이 지지하는 대표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입법예고안이 방송법 취지를 충실히 그나마 반영하고 있고, 보도 공정성을 수행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입법예고안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윤성욱 위원님께서 행정예고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조금 전에 고민수 위원님께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모법의 취지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법의 취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성재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성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그것입니다. 종사자의 범위 혹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논의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종사자 대표가 조금 더 편성위원회에 강력한 힘을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절차적 정당성, 즉 투표의 절차를 거친 또 다른 위임 방식이 보장되고 담보되어야만 저는 비로소 편성위원회가 갖는 본질적 함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표성을 위임받는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거쳐 가는 것이 맞고, 그것이 담보되어야 비로소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거친다는 그 정신이 들어가자는 것이지, 저는 이 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그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2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모법의 정신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비로소 편성위원회가 출범하는 본질적 의미를 가진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류신환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과반 근로자에 대해서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것은 근로자 중에도 종사자의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과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 논리는 약간의 비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하면 처음부터 '종사자'라는 개념을 없애고 '근로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종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안에 과반노조가 있고 그분들 중에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조금 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관심도 많고 방송계의 관심도 매우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간에도 약간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취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명확하게 드리는 것이 책임성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지양하면서 이 사안의 중요성과 체계성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규칙 제정권을 형성하는 것에는 입법 체제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근로자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개념 자체도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청해야 할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법이 이미 이루어져서 방송법 등으로 그 입법 정책이 결정된 내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행정 입법 차원의 행위이므로 그 체계 내 한계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범위를 거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방송법 제4조 그리고 제4조의2에 편성위원회를 도입한 취지, 그리고 편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5인 그리고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으로 대등주의를 채택한 취지, 이러한 모법의 입법 취지와 한계 내에서 그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합니다. 금방 제가 방송법을 예를 들어 제4조와 제4조의2가 저희들이 입법 형성을 하는 중요한 입법적 지침이 된다는 점을 상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도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제4조에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편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저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데 그 권한마저도 이 대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굳이 저희가 명명하자면 자율주의의 원칙입니다. 방송사별 자율주의의 원칙이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의 대원칙이고, 이 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의 행정입법 형성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취재·보도·제작·편성의 개념도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부분만은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인 것이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송사별로 방송의 자유의 주체들이 정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의가 대원칙이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른 저희의 행정 개입주의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그래서 방송의 자유가 최대한 공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정한 방송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된 그리고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입법이 채택한 또 다른 원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 대등주의 원칙입니다. 노사 대등주의 원칙을 채택한 취지를 헌법과 방송법의 다른 체계와 연계해서 보면 이것은 방송의 자유를 그리고 그것의 더 핵심적인 부분인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 내에 내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경영상의 방침에 따라 방송 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방송편성위원회의 주요한 직무가 바로 이러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뭐냐 하면 편성위원회에 있어서 노사 대등주의의 원칙입니다. 방송사업자 외에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을 대등하게 배치한 것입니다. 이 대등주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원칙이라는 비례주의에 따라 각 종사자들이나 방송의 자유를 위한 모든 구성원들이 비례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런 구조로 했을 때 오히려 방송 편성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반영하여 단체주의

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대표가 그 편성의 자유를 핵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문 대표들로 특별히 구성되어서 단결된 힘으로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의사결정 행위들에 나서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주의는 류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어 있는 그런 입법적 지침 중 하나인 것이고, 방송법의 방송편성위원회 제도가 그것들에 터 잡고 있고 저희는 그 입법적 결단에 따라 단체주의 요소도 이 행정규칙에 의해서 형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또,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문 종사자들의 개별적인 의사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공익, 그리고 기본권적 이익, 방송의 자유 이익 외에 균등한 교섭력을 확보해서 방송사업자에 의해 노-노 갈등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자유를 좀 더 확고히 단체주의적 입장에 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오로지 절차적 그리고 개인주의에 따른 종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 부문 종사자 대표가 결정되도록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법에서 설정해 놓은 개인주의와 단체주의의 혼성주의, 혼합주의 결합해서 또 자율주의와 행정의 보충적 개입주의 이런 것들의 원칙을 어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제3항을 고민해서 허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편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혼동되어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사장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방송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사 등 임원 선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편성규약이나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구현하기 위한 것에 핵심이 있는 부분들이고, 임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통해 임원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통로가 간접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시청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들에 관한 것을 종사자 대표가 관여하는 편성위원회가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 두 번째 부문 종사자 부분들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 배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관여하게 한 것이 입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모든 종사자들이 다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임직원의 과반수가 제작, 기술 등의 부분적인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의 경우에는 3인을, 방문진이나 교육방송법에 대해서는 2인을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편성위원회에 관련된 이 부분들의 종사자 대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장황하지만 새로운 법 체계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우리 헌법과 방송 3법 등의 기본 취지 그리고 그것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자유의 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장황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상근 위원

-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자율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이제까지 한 번도 반론을 제대로 제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5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의가 자유주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단체주의를 표명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단체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장이 학술세미나장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개진이 있었고, 저희 의결 대상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예고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예고안의 제3항을 삭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숙의해 주셨고 심의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단 기본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의결을 위해 다시 한번 의사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아까 주신 의견에 따라 정리해 보면 <2안> 삭제안에 대해서는 이상근 위원님과 최수영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주셨고, 행정예고안대로 하는 <1안>에 대해서는 류신환 위원님, 고민수 위원님, 윤성욱 위원님과 결론적으로 저도 여기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리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제가 정리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1안> 또는 <2안>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시 한번 특정하면 전체 안 중에서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예고안 제2조의3 종사자 대표의 자격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만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기본적으로 했는데 또 표결하는 의결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 행정예고안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본적으로 정리한 대로 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까 정리한 대로 두 분이 거수를 해 주셨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6인이 출석해서 과반수는 4인이고, 지금 4인이 찬성하는 안이 <1안>인 행정예고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1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건은 원안 <1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이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2026-07-406)

○ 김중철 위원장

- <의결사항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겸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령(안)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위임 제·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안은 비상임이사 추천 관련 ‘교육 관련 단체’ 규정이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법제처 사전심사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정 목적입니다. 신규 규칙 제정에 따라 법 취지를 고려한 제정 목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고, 별도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 이사추천단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예고안은 공영방송 이사추천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및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추천단체의 기본요건, 절차, 평가기준, 재추천, 선정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항 각 호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심사 항목이 누락되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시 제3조 제4항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계부처 의견 등 접수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3조 제2항에 누락된 심사 항목을 보완하고, 제3조 제4항의 내용을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로 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추천단체별 요건입니다. 행정예고안은 이사추천단체 공모와 관련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교육 관련 단체’의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의 경우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방송 또는 언론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였고, 교육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접수된 의견으로는 ‘교육 관련 단체’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의 대표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추천단체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상 근거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추천인사에 대한 책임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여론조사기관 기준입니다. 행정예고안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중립성·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규칙 개정안의 경우에는 관보게재 및 시행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의결 및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송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띠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2026-07-407)**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라>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 겸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칙 위임 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입니다. 신규 규칙 제정에 따라 법 취지를 고려한 제정 목적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 이사추천단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추천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및 심사 제도를 도입코자 하였습니다. 추천단체의 기본요건, 절차, 평가기준, 재추천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제3조 제4항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3조 제4항의 내용을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로 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천단체별 요건입니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이사추천단체 공모와 관련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방송 또는 언론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였고,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를 주 회원으로 하되 변호사의 권익보호, 법률제도의 개선 및 공익적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코자 합니다. 6쪽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예고안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중립성·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기준과 결격사유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유지코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보게재 및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의견 없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른바 방송 3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정비가 이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위원회에 안건이 보고된 이후, 그간 위원회는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급적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 3법은 이미 시행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의 공백으로 인해 많이 지연되어서 행정 공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의 공백을 넘어서서 집행이 지연됨으로써 방송 현장의 불확실성을 매우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의결이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향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법령 공백에 따른 방송 질서의 혼선들을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나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행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하는 방송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은 제가 논의과정에서 자율주의의 이름으로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후속조치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방송사 등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 (주)케이티의 이동전화 단말기 S25 사전예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408)**

○ 김중철 위원장

- <의결사항 마> “(주)케이티의 이동전화 단말기 S25 사전예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해선 통신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를 위반한 (주)케이티에 대해 [별지]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이동전화 단말기인 “갤럭시 S25 시리즈 3종”의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시 “선착순 1,000명” 인원 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피심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안)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과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

쪽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25년 1월 7일 사전예약 알림시작부터 2월 7일 사전예약 신청분 개통 시까지입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피심인은 조사기간 중 단말기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조건 및 고지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이 19조 3,240억원이고, 이 중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은 6조 8,509억원이며, 가입자는 1,364만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초 사실입니다. S25 사전예약 기간 운용입니다. 피심인은 S25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25년 2월 7일 정식 출시일 이전에 사전예약 알림 및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S25 사전예약 기간별 혜택입니다. 사전예약 알림 기간 중 피심인은 이용자가 '25년 1월 7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사전예약 알림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예약 신청 기간별 혜택입니다. 피심인은 KT닷컴, 유튜브 및 지니TV, KT 모바일 앱(app) 설치 등을 통해 실제 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각각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온라인 "KT닷컴"을 통한 가입 시 혜택입니다. 피심인은 사전예약 알림 기간 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 기존 온라인 "KT닷컴"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이미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S25 사전예약 온라인 개통 절차입니다. 피심인은 온라인 KT닷컴 등으로 S25 사전예약한 신청자에 대해 '25년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전산상 개통 절차를 진행한 후, 주소지로 단말기를 배송하고 주문 완료 문자를 발송하여 개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위 사실입니다. 이용자 모집 시, 인원 제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전예약 알림 기간 중 피심인은 S25 사전예약 신청 기간 알림을 신청하면 제공상품·인원·추첨방식 등의 3개 혜택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면서,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으로 사전예약 신청 기간 중 피심인은 각각의 혜택별 상품·인원·추첨방식 등을 고지하면서도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먼저 "KT닷컴"을 통해 이용자 모집할 때도 각각의 혜택을 고지하면서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실제 개통 시입니다. 실제 개통할 때도 이 단계에서는 S25 기종별 색상·용량 및 가입유형·요금제, 선택약정·지원금 선택 등의 개통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공 혜택을 취소할 때도 혜택 취소 시 유의사항을 고지하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마감 시 별도 공지됩니다. 마감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면서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유튜브 및 지니TV"를 통한 모집·취소 시입니다. 이용자 모집을 할 때 피심인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댓글 창에 노출되어 있는 피심인의 "KT닷컴"으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최대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니TV입니다. 피심인은 자체 운영하는 지니TV를 활용하여 S25 이용자 모집을 위해 지니TV 가입자가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하면서 마찬가지로 선착순 인원 제한 혜택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제공 혜택 취소 시입니다. 피심인은 유튜브 및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전예약 신청 1일차인 1월 24일 0시부터 2일차인 25일 8시까지 신청한 12,339명 중 7,127명의 사전예약 신청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1월 25일 17시경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은 ‘선착순 1천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되어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되어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입니다.”라는 취소 문자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으나, 이때에도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만, 피심인은 통상의 이용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신청자가 급증하여 일부 유통망에서 “유튜버 및 지니TV”를 이용한 불·편법 영업이 발생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KT 모바일 앱(app) 설치 등”을 통한 이용자 모집 시입니다. 이용자를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착순 인원 제한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고, '24년 연간 이용요금 납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고객”을 선정한 후, 이 고객들이 S25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KT샵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선착순 인원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제한 또는 중단입니다. 피심인은 S25 사전예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1월 24일 0시부터 25일 8시까지 “유튜버 및 지니TV”로 사전예약한 12,339명 중 7,127명을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해당 신청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25쪽 소결입니다. “선착순 1,000명” 인원 제한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뒤늦게 고지한 행위는 “이용자 모집을 위하여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27쪽 소결입니다. 피심인의 행위는 S25 사전예약을 통해 이벤트 혜택 선택과 카드결제 정보 입력 등 가입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 7,127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서비스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가입을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입니다. 피심인은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은 전체적으로 1개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가입 제한 행위는 이용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 모집 시 거짓 고지 행위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을 오인하여 잘못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체결 시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각각 별 건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피심인은 또한 과거 방통위 선례 등에 의할 때 1개의 제재 처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검토 결과를 보시면 과거 방통위는 심결 시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 사안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각의 별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9쪽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먼저 시정 명령(안)입니다. 피심인은 “이용자 모집 시, 중요한 사항 거짓 고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함. 가) 금지행위의 중지(즉시), 나)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다)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마)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입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과징금 부과(안)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위반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을 부과함. 매출액 산정입니다. S25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가입 제한 행위는 일방적 취소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일 뿐 관련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신규 출시되는 S25 신청자에 대한 월평균 매출액과 평균 가입기간 등 관련 매출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그리고 S25 사전예약 기간 중 위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직·간접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음 32쪽 기준금액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반행위 ① - 이용자 모집 시, 중요한 사항 거짓 고지 관련입니다. 피심인의 위반 행위가 본질적인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는 중대하지만 영향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적은 점, 그리고 사전 고지 없이 7,127명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취소한 점, 그러나 일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기준금액을 4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위반행위 ② -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제한한 행위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4억원을 기준금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최근 3년간 피심인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를 감경하고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24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결과, 이동통신분야에서 피심인은 "우수" 등급을 받아 관련규정 및 과거 적용 전례에 따라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를 각각 감경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최종 과징금입니다. 위반행위 ①, ② 모두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3억 2,4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피심인에 총 6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6월에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는 과징금 부과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니까 KT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20조에 가깝고, 그다음에 가입자가 1,400만명에 육박하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사실 민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찌 보면 국가통신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KT 측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동의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에 가까운 기업이 유튜버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저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유튜버를 통해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1,400만명 가입자가 있고, 자체 운영하는 지니TV, 물론 여기도 거짓 고지한 것이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런 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버까지 동원해서 신상품을 홍보한다? 물론 이것이 시장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나 KT가 갖는 지배적 속성에 비춰보고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가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사무처께 질의를 드립니다.

○ 전혜선 통신시장조사과장

- S25 등과 같이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대부분 이통 3사가 모두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KT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 좀 더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7쪽에 보시면 유튜버가 나옵니다. 6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를 활용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위원

-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이 과연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에 가까운 KT 측이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규제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시정명령과 이행점검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 최수영 위원

- 그런 것들 시정명령에 추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려해 보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사무처에서 정리해 주셨듯이 허위사실 고지한 행위와 가입 제한한 행위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분은 전체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한된 기준 안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이 위하효과를 고려했을 때 과징금 기준에 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 번 시간을 가지고 따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경제적 제재효과를 통해 행정 질서나 국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방안들을 수립하기 위한 전 부처적 노력들이 있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과태료·과징금 그리고 형벌을 통한 제재 등 이런 공익 그리고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류신환 위원님께서 환기시켜 주셨고,

이 건은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공백 때문에 이런 전면적인 검토들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만 향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제를 정비하거나 행정지도들을 할 때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 ○ 김종철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강욱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는 안 제2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는 안 제35조의4로 신설하였습니다.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은 안 제35조의5로 신설하였습니다.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의무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은 안 제35조의6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때 성명과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대상 상세주소,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증빙 자료를 필수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공표 방식,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등은 안 제35조의7로 신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안 제35조의8로 신설하였습니다.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은 안 제35조의9로 신설하였습니다.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투명성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안 제35조의1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 강제징수의 위탁 등은 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로 신설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고시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안건은 이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후속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7월 7일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빨리 향후 계획들을 고려하면 오늘 보고하고, 또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하고 의결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서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목적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상의 공적 질서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관련해서 투명성센터 등을 통해 공론장의 질서를 좀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표현에 따른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행정기관으로서의 과제는 입법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그다음에 관계전문가 폭넓게 시민사회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 새로운 제도가 미디어 생태계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종안 마련에 사무처와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중지를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시행령 안 제35조의6이 신설 되는데 그 내용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신고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급변한 미디어 환경의 주요 현안들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부분들이 빈발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사항이 아니고 필수 기본사항이 되고 있어서, 특히 행정 책무를 맡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민수 위원님께서 환기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사무처에서 이 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인에 대한 기준 이런 점들은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제공자 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게재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정말 위원들 간 대단한 숙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소화시키자, 그런 안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사항으로 마련해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시행 되면 상당한 논란과 여러 가지 반작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첫 발을 디딘다는 차원에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되 보완할 점들이 많으므로 사무처의 꼼꼼한 모니터링 과 그다음에 여론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업들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저희가 입법예고 이하로 쭉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동일한 취지여서 발언 신청을 철회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2024~2025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김중철 위원장

- <보고사항 나> “2024~2025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별 서기관

- “2024~2025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 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2024~2025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재승인 조건 점검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24년 TV홈쇼핑 5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 '25년 TV홈쇼핑 2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4년 미이행 10건, '25년 미이행 9건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승인 이행 조건별 세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편성비율 조건은 TV·데이터홈쇼핑 전체 채널이 대상이며, '24년·'25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 중소기업 지원은 데이터홈쇼핑 대상 조건으로 '24년·'25년 계획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아래 <표>에 나온 것과 같이 대상 채널별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24년 롯데홈쇼핑 미이행 건 이외에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이행조건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액수수료 방송 조건입니다. 아래 <표>에 채널별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며, '24년·'25년 계획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은 홈앤과 롯데에 아래와 같이 각각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점검결과 홈앤쇼핑은 이행하였고, 롯데홈쇼핑은 미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다음 시청자와 소비자 보호는 아래 <표>의 조건이며, '24년·'25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 방송 발전 관련은 데이터홈쇼핑 대상 조건으로 점검결과 '24년·'25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계획 성실이행은 사업계획서상 세부 계획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조건입니다. 중요계획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액은 KT알파쇼핑이 '25년 미이행하여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은 W쇼핑이 미이행하여 '24년·'25년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12쪽입니다. 행정지도 후 비중요계획 반복 미이행 건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쇼핑엔티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는 W쇼핑, NS Shop+가 미이행하였으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쪽입니다. 비중요계획 미이행은 행정지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영업을이익의 사회환원은 쇼핑엔티가 미이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는 롯데홈쇼핑과 NS Shop+가 미이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W쇼핑이 미이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는 신세계쇼핑, 롯데홈쇼핑, 쇼핑엔티가 미이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조직·인력관리 및 직원 교육훈련은 롯데홈쇼핑 외 8개 채널이 미이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행정조치 사전통지하고 홈쇼핑사업자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근 위원

- 롯데홈쇼핑이 미이행하는 항목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새별 서기관

- 저희가 '07년도부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었고, '15년 공정위에서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점검이 강화되면서 점검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상근 위원

- 특별히 롯데홈쇼핑이 미이행이 많은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 김새별 서기관

- …….

○ 이상근 위원

-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새별 서기관

- 예,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께서 사무처에 추후 보고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이 보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업계획을 중요계획과 비중요계획으로 누가 이것을 나누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중요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비중요

계획이라고 해서 점검하고 또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 이영철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5년도에 홈쇼핑이 한참 성장할 때 불공정 거래행위가 많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홈쇼핑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성실행의무까지 해서 (재)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승인조건 및 사업계획 이행점검 후속조치라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성실행의무라는 것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비중요한 것이냐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계획으로 만들어놨던 것이 중소기업 지원이나 중소기업 보호뿐만 아니라 방송의 편성 같은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항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인사, 교육이나 홈쇼핑 사업과 특별하게 많은 관계가 없는 것들은 비중요사항으로 해서 그때 중요사항 위반은 시정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정명령도 경미한 수준이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행정지도는 비중요계획에 대해서 위반하면 행정지도를 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한 것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롯데홈쇼핑은 왜 많은 것을 미이행했느냐고 하셨는데 당장 '21년~'25년만 봐서는 내부적인 사정이 많습니다.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판매상품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고민수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것을 이행점검하느라고 사무처 분들도 고생하시고 사업자분들도 이 자료 만드느라고 또 고생하실 텐데, 이것이 행정지도 대상 사항이라면 예전에 홈쇼핑이 잘 나갈 때야 열심히 모니터링도 하고 나쁜 짓 못 하게 공정거래하도록 열심히 지켜보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해 주어야겠지만 지금 홈쇼핑업계가 예전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때 강화됐던 내용을 현재까지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도 비슷한 결인데 홈쇼핑에 대해 승인조건을 부과해서 재허가해 주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지요?

○ 이영철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 주로 5년, 7년입니다.

○ 최수영 위원

- 자료의 주요 경과에 보면 2020년에서 2023년 17개 흡소핑에 대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 도래하는 것이 2027년부터 2029년 정도에 재허가가 도래되겠지요? 지금 고민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때 2020년에서 2023년에 재허가할 때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았고 그다음에 흡소핑이 호황인 시절이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때 보면 그때는 굉장히 호황이었으니까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제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당신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4년 사이에 급격하게 시장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향후 정책 수립이나 이른바 재허가 조건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대해 현실성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께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행정의 자세 그리고 기준, 원칙, 전향적 태도 등에 대해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흡소핑 관련 부분들은 그런 변화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사무처는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러면서도 급변하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 김종철 위원장

-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혹시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2시간 휴식시간 없이 계속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매번 말씀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감사의 마음은 위원장으로서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숙의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9. 폐 회

○ 김종철 위원장

- 이상으로 2026년도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폐회】